

## 20.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

법무부공고제2000-2호 2000. 1. 15

### I. 은전조치의 취지

- 건설업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는 부실 공사 방지 등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
- 그러나, 건설업계가 민·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에 별도로 공공부문의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이중의 제재를 받고 있어
  -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, 신인도의 하락에 따른 해외공사 수주 장애 등으로
  - 건설경기의 하락 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
- 따라서, 「입찰자격의 제한」을 해제하여, 건설업계가 과거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
  - 건설경기 활성화와 대규모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등 국가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II. 해제조치의 범위

#### 1. 건설관련업체의 범위

##### 개요

- 국가 등 공급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(조사·설계·시공·감리·유지관리)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
-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“건설 관련업체”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

##### 해당업체

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
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
-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
-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 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

-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  
1호 서식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  
표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 
「건설」부문 외의 부문 중에서도 건설  
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
  - 기타
    -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
    -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
업자
    -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
    -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
    -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환경관련방지시설  
업자
- 설기술자 보다는 넓은 개념임
- 해당기술자
-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  
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  
당하는 자
    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
    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 
감리원
    -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
    -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

## 2. 건설기술자의 범위

### 개요

- 1999. 12. 31 이전에 제1항의 건설관련업  
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  
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  
설관련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
-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  
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
-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 
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 
 대상이 되고,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  
속 여부는 불요함
-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건

## 3. 행정처분의 범위

### 개요

-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  
한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 
의 감점을 포함, 이하 같음)하는 원인이  
되는 행정처분 등

### 해당 행정처분 등

- 부정당업자 제재
  -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
  - 자격정지
  - 과징금
  - 과태료
  - 부실벌점
  - 시정명령, 경고처분, 재해율 적용 및 기타  
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 등
- ※ 단, 등록말소 또는 등록 취소, 자격취

## 소는 제외

### □ 효과

- 부정당업자제재·영업정지 등
    - 1999. 12. 31 현재 이미 처분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진행중인 부정당업자제재,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, 자격정지는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  -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- 과징금·과태료 등
    - 1999. 12. 31 이전에 이미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함
    - 다만,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- 부실별점
    - 1999. 12. 31 이전에 부과된 부실별점은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  -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- 시정명령
    - 1999. 12. 31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됨
    - 다만,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  - 1999. 12. 3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0. 1. 1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
- 되고 있으며 2000. 1. 1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기능
- 재해율 적용
    - 1999. 12. 31 이전에 평균재해율을 초과한 자에 대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. 1. 1부로 즉각 해제
    - 단, 1999. 12. 31 이전에 평균재해율에 미달한 자에 대한 우대는 계속 적용
  - 경고처분 및 기타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 등
    - 경고처분 및 기타 조치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0. 1. 1부로 해제
    - 형사처벌에 따르는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0. 1. 1부로 해제
- ※ 민·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
- ▲ 결론적으로 1999. 12. 3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함

## 4. 기타

-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의 적용
  - 2000. 1. 1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 터 적용
  - 다만, 2000. 1. 1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 중 2000. 1. 15 현재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

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
#### ※ 은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

- 관련기록에 「2000. 1. 1부 대통령 은전조치」라는 내용 표기

- 본건 은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·관리함

### III. 은전조치 시행방법

#### □ 시행방법

-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
  - 관련기록에 본건 은전조치의 취지를 부 기하고,
  -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
-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은전조치의 취지를 부기
-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,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
  - 1999. 12. 31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

#### □ 결과통보·보고 등

-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·감독하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
  - 2000. 3. 31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 현황을 법무부장관(참조: 검찰제2과장)에게 통보
- 대통령 은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 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
- 법무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대통령께 즉시 보고

#### □ 질의

-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법무부 검찰제2과,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로 질의

## &lt;별표&gt;

##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른 수혜자현황 통보

| 수혜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|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혜자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◦ 건설관련업체                  | ◦ 부정당업자 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|
| - 건설업자                    | -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감리전문회사                  | -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 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       |      |
| - 품질검사전문기관                | - 은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건축사사무소                  | ◦ 영업정지,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|
| 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            | -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             | -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 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       |      |
| - 기술사사무소                  | - 은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전기공사업자                  | ◦ 과징금,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|
| - 정보통신공사업자                | - PQ 및 적격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소방설비공사업자                | - 은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문화재수리업자                 | ◦ 부실벌점   | 소계   |
| - 환경관련방지시설업자              | - 부실벌점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◦ 건설기술자                   | - 은전조치로 부실벌점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| ◦ 시정명령, 경고처분, 재해율 적용 및 기타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 등 | 소계   |
| -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          | -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- 기타기술자                   | -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은전조치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계  |      |

(주) 작성요령 : ① 수혜 대상자별로 작성

- ② 하나의 업체 또는 기술자가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순서에 따라 하나만 기재
- ③ 2000. 1. 1 이후 적발된 행위 등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2000. 2월말 기준으로 산출